의 안	번 호	제	ই
의	결	2021.	• •
연역	일 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현행 적산 전력계, 굴뚝 자동측정기기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추가(안 제1 7조제1항제3호 신설)
- 나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, 대 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(안 제17조제6항 신설)
- 다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제2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"자가"를 "사람이"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"자"를 각각 "사람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착하여야"를 "부착해야"로 하고,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물인터넷(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·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)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·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(이하 "사물인터넷 측정기기"라한다). 다만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제1호에 따른적산전력계의 설치를 면제한다.

제17조제5항 중 "부착하여야"를 "부착해야"로 한다.

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며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,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와 같다. 이 경우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. 측정기기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기

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 제목 중 "굴뚝 원격감시체계"를 "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"로 한다.

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(이하 "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" 를 "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 및 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"로 한다.

제19조의3제1항 중 "별표 3의2와"를 "별표 3의3과"로 하고, 제2항제3호 중 "별표 3의2"를 "별표 3의3"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"환경기사 1급 또는 2급"을 "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"로 한다.

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,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 별표 15 제2호터목 중 "응하지"를 "따르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별표 1의3에 따른 4종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까지, 같은 표에 따른 5종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까 지 각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 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.
 -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 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까지 사물인터넷 측 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 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 이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.

[별표 3의2]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,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(제17조제6항 관련)

1. 부착 면제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.

- 가.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나.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(전력계에 한정한 다)
- 다.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(전력 계에 한정한다)
- 라. 흡수에 의한 시설 중 pH계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
- 마.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, 개보수 등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

2. 부착 시기 및 유예

- 가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 착해야 한다.
-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이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④	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④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	⑤	
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		
며,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		
중 위원장이 지명한 <u>자가</u> 된다.	<u>사람이</u>	
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(생	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(현	
략)	행과 같음)	
② 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대	②	
기오염물질대책 관련 환경부 소		
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		
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		
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은 다음		
각 호의 사람이 된다.	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
3.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	3	
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 중에서	사람	
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<u>자</u>	사람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
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	4	
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		
명을 두며, 간사는 환경부소속		
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		
명한 <u>자가</u> 된다.	<u>사람이</u>	

제17조(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 장 및 종류 등)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<u>부착하여야</u> 한 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

제17조(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
장 및 종류 등) ①
<u>부착해야</u>
 ,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사물인터넷(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·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)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·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(이하 "사물인터넷 측정기기"라 한다). 다만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설치를 면제한다.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 - ⑤ -----
- 측정기기를 <u>부착하여야</u> 하는 사 -----<u>부착해야</u>-----

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 ----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, ----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----배출시설, 측정 항목, 부착 면제, ----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(猶豫)는 ----별표 3과 같다. ----

<신 설>

⑥ (생략)

제19조(<u>굴뚝 원격감시체계</u> 관제센 터의 설치·운영) ① (생 략)

<신 설>

-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사물인터 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며, 사물인터 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, 부착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와 같다. 이 경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, 측정기기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- 제19조(<u>굴</u> 원격감시체계 관제센 <u>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</u> ----) ① (현행과 같음)
 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 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사 물인터넷 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 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(이

- ② <u>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</u> 제센터의 기능·운영 및 자동측 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9조의3(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)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<u>별표 3의2와</u> 같다.
 -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<u>별표 3의2</u>의 기준에 따라 등 록된 기술인력의 현황
- 제39조(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제39조(환경기술인의 자격임명기간) ① 법 제40조제1항에 임명기간) ① -----

<u>하 "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</u>
센터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할
<u>수 있다.</u>
③ 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 및
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
기기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
관제센터의
<u>.</u>
제19조의3(측정기기 관리대행업
의 등록기준 등) ①
별표 3의3과
②
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별표 3의3</u>
제39조(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

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. 다만,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・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2
<u>ই</u>
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
② (형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대기관리과			
연	락	처	(044) 201 - 6905